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구성원 또는 중재인이란 제14.5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 나. 중개인이란 부속서 14-가에 따라 중개 절차를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 다. 후보자란 그 이름이 제14.18조에 언급된 중재인의 명부에 있고, 제14.5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 라. 보조인이란 구성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 마.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상의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 바. 구성원에 대하여는,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구성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2조
절차에 대한 책임

모든 후보자와 구성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완전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구성원들은 이 부속서 제6조 및 제7조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3조
공개 의무

1. 이 협정상 중재패널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2. 후보자 또는 구성원은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무역위원회에만 전달한다.
3. 일단 선정되면, 구성원은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모든 단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구성원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구성원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무역위원회에 알림으로써 공개한다.

제4조 구성원의 의무

1. 선정되는 경우 구성원은 절차의 과정 내내 공정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2. 구성원은 그 절차에서 제기되고 판정을 위해 필요한 그러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의 제2조, 제3조 및 제7조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구성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1. 구성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그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재패널에서의 그의 지위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하는 행동을 피한다.
4. 구성원은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협용할 수 없다.
5. 구성원은 그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6조 전임 구성원의 의무

모든 전임 구성원은 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이 도출되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제7조 비밀 유지

1.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그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동안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이 협정에 따른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구성원이나 전임 구성원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구성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중개인

구성원 또는 전임 구성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부속서에 기술된 규율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